상법개정안과 기업지배구조

2017 한국재무학회 제1차 춘계 정책 심포지엄

2017.04.13

이준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목차

- 논의배경 및 경과
- 제20대 국회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 현황
- 주요 상법개정안

  전자투표제 의무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사외이사 선임 요건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주주대표소송제 강화,
  자사주 배정금지

- 기타 상법개정안
- 결어

논의배경 및 경과

18대 대선 시 경제민주화 이슈

-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 견제
- 소액주주 이익 보호

법무부 입법예고

-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13년7월)
-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 의무화, 전자투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 도입, 집행임원 의무화

19대 국회 논의

- 상법 개정안 다수 발의, 법사위 심사, 자동폐기

20대 국회

- '17년 3월까지 총 33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이 중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률안은 17개로 현재 국회 계류 중

논의배경 및 경과

기업지배구조 여전히 낙후

- 이사회 유효성 109위, 소액투자자보호 97위
  ('16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평가, 138개국)
- 아시아 8위
  (아시아지배구조협회, 11개국)

2016 아시아 기업지배구조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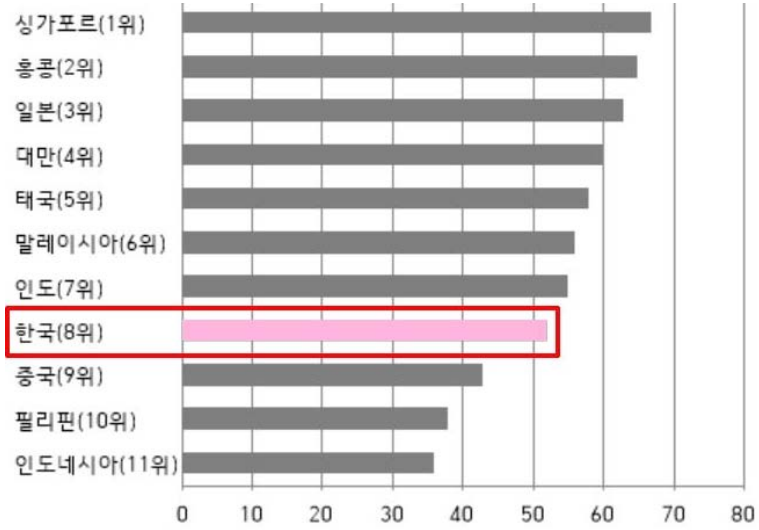

이미 입법화된 제도

- 집중투표제 ('98년)
- 감사위원회 제도 ('99년)
- 사외이사에 대한 일반 및 특례규정 ('00년, '09년)
- 전자투표제 ('09년)

권유 선택적 사항 → 의무화, 강제화

제20대 국회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 발의 현황

항목	대표발의의원
전자투표제 의무화	김종인(민), 채이배(국), 노회찬(정), 오신환(바), 박정(민)
집중투표제 의무화	김종인(민), 채이배(국), 노회찬(정)
감사위원 분리선출	김종인(민), 채이배(국), 노회찬(정), 오신환(바)
사외이사 선임요건 강화	김종인(민), 채이배(국), 노회찬(정)
다중대표소송제	김종인(민), 채이배(국), 노회찬(정), 이종걸(민), 오신환(바)
주주대표 소송제 강화	김종인(민), 채이배(국), 노회찬(정), 이종걸(민), 오신환(바)
자사주 배정금지	박영선(민), 박용진(민), 이종걸(민), 오신환(바)
합병유지청구권	이종걸(민)
보수위원회 설치	김동철(민)
이사 책임 및 자격강화	노회찬(정), 박광온(민)
이해관계자 의결권 제한	이언주(민)
경영권 승계규정	민병두(민)
부당이익환수	이원욱(민)
차등의결권 도입	정갑윤(새)
신주인수선택권 도입	정갑윤(새)

대한민국국회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주요 상법 개정안

- 전자투표제 의무화
- 집중투표제 의무화
- 감사위원 분리 선출
- 사외이사 선임요건 강화
- 다중대표소송제
- 주주대표소송제 강화
- 자사주 배정금지

개 요

개념	주주들이 주주총회 현장에 가지 않고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의 의무화
목적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 독려
주요내용	- 일정 주주 수 이상의 상장회사는 전자투표를 의무화 (김종인안) - 일정 주주 수 이상의 상장회사는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 중 한 가지 방법 의무화 (채이배, 오신환안) -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 중 한 가지 방법 의무화 (노회찬안) - 서면투표 의결권 행사요건을 전자투표와 동일하게 정관이 아닌 이사회 결의로 변경 (박정안)
현행법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상법 제368조의 4)

찬반

찬성

- 슈퍼주총으로 인한 의결권 행사 기회 상실 가능성 축소

  ('17년 3월 24일 상장사 2,052개 중 924개사 주총)
- 소액주주 따돌리기 주총 원천적 봉쇄
- 의결권 행사 편의성 증대
- 주식보유기간 증대 가능성

VS

반대

- 주주총회가 해킹에 노출될 가능성
- 악의적 루머로 주주 의사결정 혼란
- 여론몰이를 통해 경영진 반대세력 결집 용이
- 고령자 저학력 주주의 이용가능성 저하
- 기업 비용 증가
- 의결권 철회 변경이 불가능한 점을 악용할 우려

이슈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대체방안	- 서면투표 - 위임장권유제도 - 두 제도 모두 자율적 결정
서면투표 의무화	- 소집통지서에 의결권행사 서면과 참고자료 첨부 →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1%주주에 대한 공고제도 무의미
Shadow voting 폐지	- 예탁원이 의결권을 중립적으로 행사 - '18년부터 유예 종료
의결권 완화 필요성	- 대기업집단은 의결권 완화에 소극적
해킹 등 보안	- 전자투표 결과 조작 가능성 - 회사의 의사결정 왜곡 현상
채택국가	- 일본: 서면투표제도 의무화 - 미국: 위임장권유제도 의무화 - 대만, 터키: 전자투표제 의무화

의견

소액주주 의결권 제도 재설계

- 유명무실한 서명투표 및 위임장권유제도
- 서면투표제 의무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서면투표제 도입 기업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 중 9.7% '16년)
- Shadow voting 제도 폐지
  ('18년부터)

대상 기업 선정 신중

- 일정 주주 수 이상의 상장사부터 우선적으로 실시
- 정착과정 검토 후 적용대상 기업 단계적 확대
- 대상 기업 선정기준을 주주 수 또는 자산규모

시대적 대세

- 미래지향적: IT에 익숙한 세대
- 한국은 IT 강국
- 안정성 담보
- 도입비율 빠르게 증가

대기업집단 계열 상장사 중 **16.4%** (27개 / 165개)

주요 상법 개정안

- 전자투표제 의무화
- 집중투표제 의무화
- 감사위원 분리 선출
- 사외이사 선임요건 강화
- 다중대표소송제
- 주주대표소송제 강화
- 자사주 배정금지

개 요

개념	2명 이상의 이사 선임 시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복수의결권을 받아 후보자 1인 또는 수명에 집중 투표하는 제도 의무화
목적	소수주주도 연합하여 이사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지배주주와 기타주주간의 견제와 균형 달성
주요내용	- 일정자산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해 정관으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게 집중투표제를 의무화 (김종인안), 상장회사 (노회찬안) 모든 회사 (채이배안) - 청구 주체: 6개월간 1%이상 지분보유, 자본금 1천억원 이상 회사는 0.5%이상 (김종인,노회찬안), 비상장사는 3%이상 (채이배안)
현행법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1%이상 소수주주 청구 (제542조의7 2항) -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사와 비상장사는 3%이상 소수주주 청구 (제382조의2, 제542조의7 2항)

찬반

찬성

- 지배주주의 전횡과 불투명한 기업경영에 대한 견제 가능
- 대부분의 상장사가 정관에서 배제하는 꼼수 제거
-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 선임 가능
- 소수주주의 이사선임 참여를 통해 주총 활성화에 도움

VS

반대

- 1주 1의결권이라는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위배
- 집중투표제는 현재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기업자율 존중 필요
- 빈번한 이사회 의견 충돌로 경영 효율성 저하 우려
- 2,3대 주주의 이익 창출 가능성 증대는 최대주주에 대한 역차별
-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이슈

소수주주 vs 기관투자자	- 집중투표제를 통해 의사 형성에 관여할 주체는 소수주주가 아닌 대량주식보유자 - 정치적 의사결정 방식과 영리회사의 의사결정 방식은 상이
실시방식	- 집중투표제를 의무화 할 것인가 기업에게 선택하게 할 것인가 - 선택하게 한다면 Opt-out 방식 vs. Opt-in 방식
다수결원칙 위배 주식의 비례적 가치에 반함	- 집중투표제는 다수주주의 지분을 비례적으로 반영하지 못함 - 단순투표제는 소수주주의 지분을 비례적으로 반영하지 못함
청구시기	- 집중투표는 총회일 6주전에 청구, 주총은 회의일 2주전에 공지됨으로 정기주총을 제외하고는 청구 불가능
집중투표대상 이사	- 동시에 모든 이사를 대상으로 투표실시 - 이사 종류별로 구분하여 투표실시
해외사례	- 미국: 의무화 8개주, Opt-out 12개주, Opt-in 30개주 - 일본: Opt-out - 의무화 국가: 러시아, 칠레, 멕시코

의견

현황

대기업집단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총수있는 집단 (146사)	4 (2.7%)	22 (15.1%)
총수없는 집단 (19사)	4 (21.1%)	5 (26.3%)
전체 (165사)	8 (4.9%)	27 (16.4%)

출처: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분석 (2016, 공정거래위)

상장기업	2010	2011	2012
유가증권시장	40 (5.8%)	38 (5.7%)	34 (4.8%)
코스닥시장	34 (3.6%)	31 (3.6%)	27 (3.0%)

출처: 집중투표제 도입현황 (2013,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기업형태에 따라 상이한 제도 도입

- 대기업집단: 의무화
- 상장사: Opt-out, 단 정관에 배제요건 상세 명시
- 상장사를 자산규모에 따라 의무화와 Opt-out 방식으로 구분
- 비상장사: Opt-in

이사 종류별로 구분하여 투표

- 이사 동시 선임 시 집중투표 효과에 대한 찬반 양론 존재
- 사내이사/사외이사 또는 사내이사 감사위원/ 사외이사 감사위원
- 청구주체는 자본금규모에 따라 1% 또는 0.5% 이상

주요 상법 개정안

- 전자투표제 의무화
- 집중투표제 의무화
- 감사위원 분리 선출
- 사외이사 선임요건 강화
- 다중대표소송제
- 주주대표소송제 강화
- 자사주 배정금지

개 요

개념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출
목적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주요내용	-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상장회사 (자산 2조원이상)는 주총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 (김종인,채이배,노회찬,오신환안) - 자산 2조원이상 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 또는 상근감사 선택 가능 (오신환안) - 의결권 제한: 최대주주는 합산 3%,기타주주는 단순 3%(김종인,채이배, 노회찬안) 최대주주나 기타주주 모두 단순 3% (오신환안) - 자산 2조원 이하 상장회사에서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에도 동일 규정 적용 (노회찬안)
현행법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상장회사(자산 2조원 이상)는 주총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상법 제542조의 12)

감사위원 분리선출

<table>
<tr><th colspan="2"></th><th colspan="5">현행</th><th colspan="4">개정안</th></tr>
<tr><th colspan="2"></th><th colspan="5">일괄방식 (2단계 선임)</th><th colspan="4">분리방식</th></tr>
<tr><td>선임 방식 내용</td><td colspan="6">[1단계]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2단계] 선임된 이사를 대상으로 감사위원 선임</td><td colspan="4">단계별 선임 없이,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인 이사와 일반 이사를 분리하여 선임</td></tr>
<tr><td>적용 기본 원칙</td><td colspan="10">◆ (합산 3% Rule)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을 합산하여 의결권을 3%로 제한
◆ (단순 3% Rule) 개별 주주의 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3%로 제한</td></tr>
<tr><td rowspan="5">구체적 선임방식 구조</td><td>1단계</td><td colspan="5">대주주의결권 제한 없이
일괄이사 선임</td><td rowspan="5">단계 구분 없음</td><td colspan="3">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아래의 유형대로 한번에 선임하는 방식</td></tr>
<tr><td rowspan="4">2단계</td><td>분류</td><td colspan="2">사내이사인
감사위원</td><td colspan="2">사외이사인
감사의원</td><td>사내이사인
감사의원</td><td>사외이사인
감사의원</td><td>일반이사</td></tr>
<tr><td>대상</td><td colspan="2">모든
상장회사</td><td colspan="2">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td><td rowspan="3">의결권
제한에 관한
기존 방식
그대로 적용</td><td rowspan="3">의결권
제한에 관한
기존 방식
그대로 적용</td><td rowspan="3">의결권 제한
없이 선임</td></tr>
<tr><td rowspan="2">의결권
제한적용</td><td>최대
주주</td><td>기타
주주</td><td>최대
주주</td><td>기타
주주</td></tr>
<tr><td>합산
3%
Rule</td><td>단순
3%
Rule</td><td colspan="2">단순 3% Rule</td></tr>
</table>

출처: 기업지배구조관련 상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책방향 (2013, 한국경제연구원)

찬반

찬성

- 감사위원 독립성 확보
- 소수주주 권한 강화
- 경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견고
- 현행 감사위원회 일괄선출방식은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
- 관련 상법 개정 전으로 회귀

VS

반대

- 대주주 의결권 침해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
-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시 적용되는 최대주주 합산 3% 의결권 제한은 역차별
- 경영권 위협 노출
- 외국계 투기자본의 지분 쪼개기 (3% 이하) 성행
- 해외 사례 전무

이슈

감사 or 이사	- 감사위원회 제도 자체의 모순성: 이사회에서 업무집행 및 감독기능 동시 수행 → 자기감시 - 감사위원의 법적 신분은 이사, 업무 성격은 감사 - 감사 선임 시에는 합산 3%, 이사 선임 시에는 제한 없음 -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의 하부위원회
합산 3%룰	- 최대주주에 대해서만 특수관계인 주식과 합산하여 3% 초과의결권 제한 (합산 3%)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적용	- 사외이사 감사위원 1인 이상에 대해 다른 이사와 분리선출 - 금융회사 규정을 일반기업에도 적용
사내이사 감사위원,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 방식 상이	- 사내(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임 시: 합산(단순) 3% - 사내(사외)이사 감사위원 해임 시: 합산 3% (의결권 제한 없음)
집중투표제와 동시 도입 시	- 최대주주의 영향력 극감 - 현실 고려 시 실질적 영향 미미

의견

감사선임 원칙 준수

- 합산 3%룰 적용
- 사외이사감사위원 비율: 96.7% (대기업집단 상장사 '16년)
- 최대주주 합산 3%룰 회피
- 감사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515 안건 중 단 2건만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음 (보류1, 수정의결 1)
- 2009년 상법개정 시 일괄선출방식 도입

합산 3% vs. 단순 3%

- 1안: 분리제도 도입 후 모든 주주에 대해 단순 3% 또는 합산 3%룰 적용
- 2안: 현 제도 유지를 전제조건으로 2단계에서 최대주주의 사외이사 감사위원 의결권에 대해 합산 3%룰 적용

감사위원회제도 제고

-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법적 신분은 이사
- 이사회는 업무집행 기관, 감사기능은 감사나 감사회가 담당
- 자산 2조원이상 상장사에 대해 감사위원회나 상근감사 중 택일하게 한 것은 현실적 대안

주요 상법 개정안

- 전자투표제 의무화
- 집중투표제 의무화
- 감사위원 분리 선출
- 사외이사 선임요건 강화
- 다중대표소송제
- 주주대표소송제 강화
- 자사주 배정금지

개 요

개념	사외이사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출됨에 따라 사외이사 제도가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사외이사에 대한 선임요건을 강화
목적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주요내용	- 사외이사 자격 결격요건 확대: 최근 5년 이내 계열사 임직원 및 6년 이상 사외이사 재직자 (김) 해당회사 및 계열사에서 5년 이내 재직한 임직원 및 해당회사에서 6년 또는 계열사 포함 9년 이상 사외이사 재직자 (채) - 사외이사 후보추천위: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한 1인 포함 (김) - 사외이사 후보: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가 추천한 후보자 포함(김)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후보자 포함 (노) - 사외이사 선임: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 추천인 (김) 근로자대표 추천인(노) - 독립이사 선임: 3% 이상 보유 주주의 추천을 받아 사외이사 1인 이상 선임, 추천위는 독립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주총에 상정 (채) - 사외이사 후보추천위는 각 사외이사 후보자의 추천인 공표 (김)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 위원 불가 (김)
현행법	최근 2년 이내에 당해회사나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임직원은 사외이사로 결격 (제542조의 8 등)

이슈

제척기간	- 금지기간이 계열사가 당해회사보다 장기: 퇴직 후 계열사는 5년간, 당해회사는 2년간 사외이사 금지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3년간 금지
당해회사와 계열사 관계	- 당해회사와 계열회사간의 상호영향력이 없는 경우
사외이사 재직기간	- 6년 vs. 9년 - 일본의 경우 사외이사 결격 근무기간은 10년 과거 근무
근로자의 이사회 참가	- 출자 없는 임원선임권 - 주주와 근로자는 지향 목표가 상이
사외이사 선임강제	- 우리사주조합이나 소수주주가 추천한 이사에 대한 선임 강제 - 근로자 추천 사외이사 선임강제는 유럽식 지배구조 전제 - 현재 지배주주나 경영진이 추천한 자가 추천한 사외이사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실정
독립이사제	- 독립이사제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 개정이 선결
대상 임직원	- 이사 등 임원 vs. 직원

의견

사외이사 제척 및 재직기간

- 당해회사와 계열사의 제척기간은 동일
- 계열회사에 대한 범위 명확화
- 사외이사 재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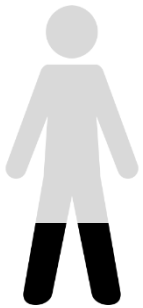

6년 초과 사외이사 비율 30대 그룹
15.4%
(총 527명 중 81명)
※ 최장재직자 21년

사외이사 선임강제

- 사외이사 후보추천위 위원은 긍정적: 우리사주조합, 소수주주 / 근로자
- 이들이 추천한 사외이사에 대한 선임강제는 신중할 필요

독립이사제 본격논의

- 이스라엘의 경우 독립이사와 사외이사를 별도로 구분
- 이사회의 모든 하부위원회에 최소 1인 이상의 독립이사 포함

독립성 강화방안

- 사외이사 후보추천위는 각 사외이사 공표후보자의 추천인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 위원 불가

주요 상법 개정안

- 전자투표제 의무화
- 집중투표제 의무화
- 감사위원 분리 선출
- 사외이사 선임요건 강화
- 다중대표소송제
- 주주대표소송제 강화
- 자사주 배정금지

개 요

개념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대표소송제기 권한 부여
목적	자회사 경영진의 잘못으로 모회사가 피해를 보는 경우 모회사 주주 구제
주요내용	- 주주대표 소송자격: 모회사 지분 1% 이상(김종인,이종걸,오신환안)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간 1만분의 1(오) 10만분의 1이상(채), 단독주주(노) -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 50%(김종인,이종걸,오신환안) 30% (채이배,노회찬안) - 회계장부열람권: 피출자회사까지 확대(채이배,노회찬,이종걸안)
현행법	현행 상법 상 다중대표소송제 관련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주주대표소송에 대한 조항만 존재 (상법 제403조, 제404조)

찬반

찬성

- 모기업의 소수주주 보호
- 주주의 개념과 범위 확장 계기
- 회사의 손해보전과 부정행위 억제 기능
- 공익적 차원에서 유익: 손해배상금은 회사에 귀속, 원고주주의 경제적 유인 미약

VS

반대

- 모자회사 법인격의 독립성 훼손
- 자회사 주주의 주주권 침해 소지
- 주주간의 이익충돌 문제 발생
- 소송 남발 가능성과 이로 인한 투자 위축
- 지주사 전환 대기업집단에 대한 역차별
- 대기업집단의 출현 방해

이슈

독립적 법인격	- 모회사와 자회사는 서로 독립된 법인격 - 법인의 주주자격 허용 사례 존재: 법 영역별로 기업집단법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추세
자회사의 범위	-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 이중, 삼중대표소송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	- 100% 완전 자회사 - 50% or 30%
소제기 주주 자격	-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 - 1만분의 1/ 10만분의 1 / 단독주주
중요성 요건	- 자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해 지배회사의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 - 지배회사 총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종속회사
채택국가	- 일본: 완전모자관계 - 미국: 완전모자관계에 대해 경제적 단일체로 간주 - 영국 독일: 제한적 인정, 법인격 개별화 엄격 - 다중대표소송제는 형평법에 기초한 판례상 제도. 성문화 추진은 무리

의견

자회사의 범위 조정

- 대법원판례: 지배회사의 주주는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003다49221 판결)
- 50% 지분보유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지분율 48.5% '15년
  지주회사 계열사 지분율 75.9% '14년)
- 상법상 모회사는 자회사 주식의 50%를 초과해서 보유하는 회사
- 50% 적용 시 청구가능 모회사
  (대기업집단의 27%, 상장사의 63% '15년
  대기업집단의 62%, '12년)

비상장사 대상

- 재벌들의 사익 편취 대상은 소속 계열 비상장사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비상장비율 **84%**
(2016년)

- 자회사가 상장사라면 대표소송 제기 가능한 소수주주 존재
- 소제기 주주요건 완화 시 다중대표소송 의미 퇴색

중요성 요건 추가

- 자회사 주식 가액이 모회사 총자산의 일정규모 이상
- 모회사 주주의 실질적 손해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 손해와 상계되는 보상적 이익의 범위에 대한 합리적 설정

주요 상법 개정안

- 전자투표제 의무화
- 집중투표제 의무화
- 감사위원 분리 선출
- 사외이사 선임요건 강화
- 다중대표소송제
- 주주대표소송제 강화
- 자사주 배정금지

개 요

개념	주주가 다른 주주들을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임직원에 대해 소를 제기
목적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대표소송제 활성화
주요내용	- 회사가 제소청구를 받고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주주에게 통지 (김종인,오신환안) - 주주가 대표소송 제기 후 합병 등으로 주주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효력인정 (김종인,오신환안) - 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사는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 (김종인,오신환안) - 대표소송 주주 요건: 상장사의 경우 10만분의 1 (채이배안), 단독주주 (노회찬안),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 (노회찬안) - 대표소송 승소 시 주주는 회사에 대해 소송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 지급 청구 가능 (이종걸안)
현행법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보유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 가능 (상법 제403조, 제404조) 상장사의 경우 6개월 보유 시 1만분의 1 (상법 제542조의6 제6항)

이슈

대표소송 주주요건	-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단독주주 - 6개월 보유 기간 필요성 논란 - 단독주주로 하는 경우 다중대표소송의 정합성 문제 발생
노조 or 근로자 대표소송	- 주주자본주의 vs.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주주자격 상실 이후 유효성	- 소 제기 후 주주자격 상실 시에도 유효 - 정당한 사유
회계장부 열람청구요건	-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청구 지분(3% 이상, 상장사는 0.1%)과 상이 - 회계장부는 이사 귀책사유에 대한 주요한 증빙자료로 활용
비상장사	- 비상장사는 제소원고의 보유 지분율이 3%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 - 주주대표소송이 소수주주 공익소송적 성격이 아닌 대주주간 분쟁의 도구로 악용

의 견

현황

- ‘97~’12까지 총 51건
  상장사 25건 (2013,박정국)
- ‘13~’16까지 총 7건
  (2013, 공정위)

활성화 필요

대표소송 주주요건

- 소송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대표소송 주주요건이 까다롭기 때문
- 상장사의 경우 6개월 보유기간 부가 시 단독주주 또는 10만분의 1로 확대
- 비상장사의 경우도 대표소송 주주요건 완화 필요

회계장부 청구 열람요건 완화

- 비상장사 3%, 상장사 0.1%, 자본금 1천억원 이상 0.05%
- 대표소송 주주요건 완화 시 회계장부 열람요건과 일치

주요 상법 개정안

- 전자투표제 의무화
- 집중투표제 의무화
- 감사위원 분리 선출
- 사외이사 선임요건 강화
- 다중대표소송제
- 주주대표소송제 강화
- 자사주 배정금지

개 요

개념	인적분할 시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목적	자사주를 이용한 분할 또한 분할합병은 대주주의 지배력을 확대시켜 주주간 소유지분구조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금지
주요내용	-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 배정금지, 분할승계회사에 대해서는 신주발행 뿐 아니라 자기주식 교부행위도 금지 (박용진,오신환안) - 자사주 처분 시 각 주주가 가진 주식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 단 회사 경영 목적 달성을 위해 특정인에게 처분 가능 (박영선안) - 자사주 취득 기간 초과 시 즉시, 특정목적 또는 질권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3개월 이내에 처분 (이종걸안)
현행법	분할 및 분할합병 시 자사주에 대한 규정 존재하지 않음

이슈

적용일자	-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업이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 vs. 법 시행 당시 존재하고 있는 존속회사도 적용 - 개정안 법률 공포 후 1년 vs. 3개월
신주배정 금지 vs. 자기주식 교부 금지 vs. 의결권 금지	- 분할회사가 신설회사에게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자체를 금지 - 신설회사가 승계회사에게 자기주식에 대한 교부도 금지 - 신주배정은 허락하고 이들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금지
자산 vs. 미발행주식	- 자사주가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이라면 신주배정 가능 - 자본을 차감하는 미발행주식이라면 신주배정 불가능
지주사 전환 제동	- 다수의 대기업집단이 자사주 배정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 - 정부정책에 부응한 것에 대한 역차별
자사주 취득 및 처분	- 특정목적을 위한 취득 타당성 제고 - 처분 시 필요한 경우 특정인에게 처분 가능 - 처분시기: 상당한 시기 vs. 3개월

의견

현 황

- 상장사 자사주 매입규모:

2013년	2014년	2015년
2.1조	3.5조	4.3조

- 주요 대기업집단 자사주 규모 ('16현재)

삼성	SK	
39.5조	6.4조	
현대차	포스코	LG
3.6조	1.5조	1.1조

방법론에 대한 고민

- 신설회사에 대한 배정자체를 금지
- 신설회사가 승계회사에 주식교부를 금지
- 자사주 배정은 실시하고 의결권을 제한
- 공정거래법과의 조율 필요

기본으로 회귀

- '11년 자사주 매입 처분요건 완화 (자사주 처분 의무조항 삭제)
- 자사주의 기본적인 취득목적은 소각
- 특정목적의 자사주 취득을 허용한다면 처분기간 단축

기타법안

합병유지청구권	- 회사의 위법행위로 손해가 우려될 경우 주주들이 사전에 이를 중지할 것을 청구
보수위원회 설치	- 최대주주 주요주주 등의 임원보수에 대해 주총에서 산정근거 설명 - 보수위원회를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사에 설치
이사책임 및 자격제한	- 부실경영을 초래한 이사가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도록 함. - 이사의 책임을 연봉 6배로 제한하는 규정 삭제 - 이사가 형사사건으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이사직 면직
이해관계자 의결권 제한	- 내부자거래에 대해 이사회가 아닌 주총에서 승인. 이 경우 이해관계자 의결권 제한
경영권 승계 규정 정립	-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와 관련된 내부규정을 사전에 마련
부당이익 환수	- 회사의 사업기회 또는 자산을 유용해 이득을 취한 자에 대해 환수
차등의결권 도입	- 주식보유기간에 따른 차등의결권 부여 - 차등의결권 주식을 통해 이익배당 비율과 의결권 비율의 분리 적용
신주인수선택권 도입	- 신주인수선택권 무상 부여

세계적 추세

OECD 기업지배구조 위원회

-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강조
- G20와 공동으로 기업지배구조원칙 개정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 추진

일본

- '아베노믹스'
- 일본판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14년 2월)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시행 ('15년 6월)
- 기업지배구조 관련 회사법 개정 ('15년 5월) : 다중대표소송제
- 원칙준수 예외설명(comply or explain)방식 채택

한국

- 2010년 이후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 후퇴
- '13년 상법개정안 법무부 입법예고, 논의 중단
-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도입기업 전무

결어

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전제하에 법안 개정

- 재벌개혁 vs. 경영권 유지 방어
- 경영권 공격이 아닌 소유권과 지배권의 괴리를 개선
- 징벌적 제재조치가 아닌 소액주주 보호
- 주주의 의결권 행사 담보
- 불법행위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
-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성 보장

입법 가능성

-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자사주 배정 금지 등 4개안은 야 3당 합의
- 대선후보 공약사항
- 신 정부 출범 이후 입법 가능성

제안

- 기업집단법 제정
- 기관투자가(펀드) 의결권의 외부위탁

감사합니다